

2020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

1. 지원개요

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

2. 세부추진계획

□ 지원대상 및 자격

-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(순직)배우자
※ 대학원에 재학하는 아래 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구분	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
등록결정	국가유공자 본인(생활수준조사 대상자* 제외) 또는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대상자), 5·18 민주유공자 본인·배우자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·배우자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
생활수준 조사 대상자*	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 (신청/처리기한) 지방보훈관서에 신청/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
- 지급액 : 최대 115만원

- 수업료(등록금)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

* 실 납부금액이 115만원 미만인 경우,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

- 자격

· 대학원 석·박사 과정(연구과정 제외)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

*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

- 단, 아래 '신청 비대상'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
신청 자격 제외

- ▶ (대학원) 정규학기 중 최초 학기(첫 학기)
- ▶ (대학원)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
 - ※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(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)
 - ※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
- ▶ (대학원) 해외유학과정

□ 선발기준

- 저소득, 성적,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(붙임1 참조)

□ 신청방법

- 아래 붙임 2, 3(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)을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(지)청에 제출
 - 구비서류: 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입증명서 (납부확인서) 각 1부
 - *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요망

□ 신청일정

- 신청기간 : 2020. 9. 1.(화) ~ 9. 29.(화)

□ 보훈장학 문의

-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(053-230-6073)

- 붙임 : 1. 2020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.
2. 보훈장학신청서 (서식) 1부.
3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(서식) 1부.

2020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

구분	대상별	신청대상	선발우선순위						
대학원 장학	국가유공자, (‘12.7.1이전 등록된) 지원대상자, 보훈보상 대상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>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등록 결정</td> <td>국가유공자 본인(생활수준조사 대상자* 아래) 또는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대상자),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생활수준 조사 대상자*</td> <td>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 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,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석·박사과정 재학자 -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</p>	구분	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	등록 결정	국가유공자 본인(생활수준조사 대상자* 아래) 또는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대상자),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	생활수준 조사 대상자*	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 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,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	<p>① 1급 중상이자 ② 생활이 어려운 자 (생활조정수당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) ③ 직전학기 탈락자 ④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⑤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①~⑤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) 성적 우수자 2) 상이등급이 높은자</p>
	구분	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							
등록 결정	국가유공자 본인(생활수준조사 대상자* 아래) 또는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대상자),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								
생활수준 조사 대상자*	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 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,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								
5·18민주 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>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등록 결정</td> <td>5·18 민주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생활수준 조사 대상자</td> <td>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석·박사과정 재학자 -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</p>	구분	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	등록 결정	5·18 민주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	생활수준 조사 대상자	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	<p>① 생활이 어려운 자 (생활조정수당 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)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①~④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) 성적 우수자 2) 상이등급이 높은자</p>	
구분	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								
등록 결정	5·18 민주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·배우자 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								
생활수준 조사 대상자	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 (신청 및 처리기한) -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 ※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(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)								

